

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73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9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2021.04.13. 개정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,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함 (안 제28조)
- 상위법 제54조에서 ‘소형주택’이 ‘국민주택규모 주택’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용어를 개정함 (안 제25조, 제57조)
- 상위법 제74조에서 ‘감정평가업자’가 ‘감정평가법인등’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용어를 개정함 (안 제23조, 제28조)
- 상위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공공재개발·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규정을 신설함 (안 제25조의2)
- 관련조문 오기로 정정함 (안 제62조, 제63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사전예고(결과) : 붙임5(자체의견 2건)

○ 입법예고 : 2021. 9. 15. ~ 2021. 10. 5. (20일간)

○ 입법예고 결과 첨부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6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7

< 붙임 1 >

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11호 중 “감정평가업자” 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 으로 한다.

제25조의 제목 “(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)” 를 “(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)” 로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)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서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 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.

1.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: 100분의 50
2.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: 100분의 50

제28조의 제목 “(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)” 을 “(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4조제2항제2호” 를 “법 제74조제4항제2호” 로, “감정평가업자를” 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을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감정평가업자로부터” 를 “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” 로, “감정평가업자를” 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을” 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“감정평가업자” 를 각각 “감정평가법인등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감정평가업자가” 를 “감정평가법인등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감정평가업자” 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 으로 한다.

제57조제1항제5호 중 “소형주택” 을 “국민주택규모 주택” 으로 한다.

제62조제1항 중 “제52조제1호” 를 “제58조제1호” 로 한다.

제63조제1항 중 “제52조제2호” 를 “제58조제2호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주택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주택과장 윤 병 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주거정비팀장 김 병 식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명 선 (행정 2909)

현행	개정안
<p>2. <u>감정평가업자가</u>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3.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그 밖에 <u>감정평가업자</u>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57조(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<u>소형주택</u>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</p> <p>6. ~ 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2조(기금의 보조·용자의 대상) ① <u>제52조제1호</u>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용자대상은 영 제77조에 의한 주요 정비기반시설로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63조(기금의 보조·용자의 신청) ① <u>제52조제2호</u>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용자를 받고자 하는 조합(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인가 받은 조합)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2. <u>감정평가법인등이</u>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 <u>감정평가법인등</u> ----- -----.</p> <p>제57조(재원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<u>국민주택규모 주택</u>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2조(기금의 보조·용자의 대상) ① <u>제58조제1호</u>----- ----- 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3조(기금의 보조·용자의 신청) ① <u>제58조제2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